



질 병 관 리 청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**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특례 계도기간 운영 재안내**

1. 관련

- 가. 「결핵예방법」 제11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부칙(보건복지부령 제898호) 제2조
- 나.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-2480(2023.6.29.)호

2. 위 호와 관련하여 잠복결핵검진 **미실시자의 검진을 적극적으로 유도**하여 잠복결핵 감염 검진율을 제고함으로써 결핵 전파 차단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입법 목적을 보다 충실히 달성하고자

- 2022년 7월 1일 이전에 검진의무기관에 신규채용된 사람으로서 2023년 6월 30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, **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('23.7.1.~9.30.)**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.

3. 계도기간 부여의 목적에 따라 계도기간 동안 귀 협회 소속 의료기관 내 **잠복결핵감염 미검진자가 검진을 완료**할 수 있도록 **적극 전달·안내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아울러 소속 의료기관에서 결핵검진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「**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**」*를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결핵제로 누리집(tbzero.kdca.go.kr)> 지침 > 결핵관리지침

붙 임.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(3차 개정판) 1부. 끝.

질병관리청장



수신자 대한의사협회, 대한치과의사협회, 대한한의사협회,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

책임공무직

김가희

결핵정책과장

최호용

전결 2023. 08. 10.

협조자

시행 결핵정책과-3087

(2023. 08. 10.)

접수 M00007675665

(2023. 8. 10.)

우 28159

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질병관리청 / <http://kdca.go.kr>
결핵정책과

전화번호 043-719-7927

팩스번호 043-719-7334

/ gaheekim@korea.kr

/ 대한민국개

질병정보 궁금할때, 감염병이 의심될 때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